(1) 인신 공격에 급여 삭감"내부 고발 직원 탄압한 '반부 패 시민단체'

```
입력 2020.09.22 (07:43)수정 2020.12.14 (17:39)<u>뉴스광장(경인)</u>
① 0
① 1
①
```

고화질 표준화질 _{자동재생} 키보드 컨트롤 아내



[앵커]

(P) (D) (D)

(F)

부패를 감시한다는 시민단체에서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을 인신공격 하고 급여까지 삭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 결과 해임 처분을 당한 가해자들은 의혹을 부인하며 해임 무효소송에 나섰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민단체 흥사단의 부설기관 투명사회운동본부 직원 A 씨는 2년 전 동료 직원의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인쇄업체를 만들어 비용을 부풀렸고, 지인을 소속 강사로 내세워 강연을 나가도록 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A 씨는 동료가 부풀린 인쇄비와 강연료 일부 등 약 7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은 오히려 이 문제를 덮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 씨/부패 신고자: "(상임대표가) 이거 별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알려지면 관리자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부 해결이 되지 않자 A 씨는 상위 단체인 흥사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후 A 씨는 맡고 있는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본부 측은 A 씨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열어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장 등은 회원 10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월급인 상 등에 앙심을 품고 상사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A 씨를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로 A 씨는 안면 마비 증세까지 생겼습니다.

[A 씨/부패 신고자: "너만 조용하면 돼, 너만 그러면 돼... 이야기하는데 '나만 죽으면 여기서 끝날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매일 옥상에 갔어요."]

결국 흥사단은 감사를 벌여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을 해임했지만, 이들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음성변조 : (흥사단이) 하나부터 열까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적시했어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비방�음 해 등 정신적 손상을 가하는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A 씨의 신상을 공개한 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밀보장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박세준/영상편집:신비오/그래픽:이희문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21일 시민단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고발 관련 보도에서, 부패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게 업무배제와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투명사회본부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로부터 제보 받은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가 아니라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제기이고,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비리를 인정하는 확약서와 사직서를 받아 정당한 조치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는 임금삭감 및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임금이 10% 인상되었으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글들은 신고자의 글 등에 대한 해명글이었을 뿐 신고자를 인신공격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전 운영위원장 반론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23일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제하의 기사에서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고발직원 탄압'에 대한 당시 운영위원장의 반론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내부고발 직원은 ▲ 2019년에 작성된 흥사단 특별감 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반론에서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된 사직서와 확약서는 통상적인 이직에 따른 사직서, 비리 내용의 외부 유출을 금 지하는 확약서이므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고 ▲ 국민권익위원회 결 정에 따르면 해당 비리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신고로 내부고발직원은 동법에 따른 부패신고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 해 당 직원은 전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임금삭감, 신분유출을 비롯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당 직원은 전 장임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임금작감, 신문유물을 비롯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
3)
4) 국민권익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즉시 부과할 것
5) 2020.09.29 국민권익위원회
6)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7) 보도자료
8)
9)
10)
11)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홍보담당관실
13) (T)044-200-7071~3, 7078

14) (F)044-200-7911 15) 뉴스배포정보 16) 자료배포 2020. 9. 29. (화) 17)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18) 과장 김기창 ☎ 044-200-7771 19) 담당자 김지혜 ☎ 044-200-7772 20) 페이지 수총 2쪽 21) 국민권익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신고자 22) 신분보장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즉시 부과할 것 23) -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불이행 시 3 천만 원 24) 이하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 받을 수 있어 -25) 26)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27)

28) □ 언론보도 내용(KBS, 2020. 9. 29.)
29)
30)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부패행위를 내부신고한 직원이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보호결정을 했음에도 신고자에 대한 인신공격 등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
31)
32) ○ 국민권익위가 삭감된 임금을 보전하고 신고자를 탄압한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임금협상과 징계절차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3)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34)
35) ○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4일 투명사회운동본부 신고자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삭감된 임금 보전 및 가해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간부들을 고발하는 신분보장등 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36)
37) ○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이행기간인 이번 달 30 일까지 신분보장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는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8)

39) ○ 국민권익위의 보호결정은 권고가 아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불이행 시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40)
41)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와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온 시민단체인 만큼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결정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42)
43) 이어 "국민권익위의 보호결정은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불이행 시에는 누구라도 엄정한 법적 제재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44)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45)
4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u>www.korea.kr</u>)
47)
48)
49)

50) 권익위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 ① 제보자지원
- © 2020.09.02 (11:39:47)
- ① 1499

M ene chara
M ene chara
M ene chara
M ene chara

and chara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문보장 조치 결정 환영

whistleblower

내는 신고 행위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보호조치 대상으로 확대 제상 자자들은 불이익조치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호루라기재단 · 내부제보실천운동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24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비위행위를 내부 임원등에게 신고했다가 사건 은폐를 강요받고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은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위원회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내부 신고 행위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보호조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함께 신고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호루라기재단.

마련할 것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피신고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사단법인 흥사단의 부설기관인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근무하는 신고자는 2018년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가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퇴직한 보조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한 후물품단가를 부풀린 의혹 등을 2018년 9월 3일~2019년 1월 30일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임원 등에게 여러 차례 신고했고, 2019년 7월 18일 흥사단 감사회에 관련 내용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은 신고자에게 사건 은폐를 강요하고 임금삭감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습니다. 또한 임원이나 회원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신고자를 음해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신고자는 2020년 3월과 4월 국민권익위에부패행위 신고와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했고, 세 단체는 국민권익위에 6월 25일과 7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신고자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나. 내부 신고 행위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보호조치 대상으로 확대

이번 결정에서 국민권익위는 위원회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내부 신고 행위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보호조치 대상으로 봤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 혐의를 외부에 먼저 신고하기보다 조직 내부의 자정 작용을 목표로 내부에 신고하는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지지 및 장려할 만한 용기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내부에서 시정되지 않아 결국 외부 기관에 신고하게 된 상황에 비춰볼 때 내부 신고 행위에 대한 보호를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7 조 제 1 항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까지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입법취지를 같이 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도 부패행위 신고를 준비하다가 받은 불이익조치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 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시정을 목적으로 내부 신고를 하였으므로, 내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마땅히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부패행위 신고에 있어 보호대상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피신고자인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신고자의 신고행위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등의 정신적 손상을 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흥사단 등에 신고자의 삭감 지급된 급여를 취소하고 삭감된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신고자들이 신고자가 임금 등에 불만을 가지고 신고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비방, 음해 행위를 지속해온 점, 반부패 정책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고 공익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간부들로서 누구보다 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에 앞장서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내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가한 점, 특히 피신고자인 전 운영위원장이 신고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계속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회 등에 피신고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피신고자들이 투명사회운동본부 회원들에게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린 것에 대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64 조제 1 항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피신고자인 투명사회운동본부 전 운영위원장은 그 동안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신고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고 우리 세 단체가 지난 6월 25일 국민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22일 신고내용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경찰에 이첩해 현재 수사 중이며, 전 운영위원장의 고소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6월 26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 피신고자들은 불이익조치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피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임금삭감, 음해, 비방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가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반부패운동과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에 앞장서왔던 시민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1)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를 촉구합니다
- ① 제보자지원
- ① 2020.06.25 (14:18:48)
- ② 2376

- A one chara
- A one chara
- m ene chara
- The ana abore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 변호사),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박헌영)은 오늘(6/25)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공공기관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내부 임원 등에게 신고했다가 사건 은폐를 강요받고 업무배제 등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제보자에 대해 조속히 신분보장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라. 권익위 신고 이전 조직 내부 신고도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해야

사단법인 흥사단의 부설기관인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근무하는 제보자는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사업비 사적 유용, 가족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사업비 부당 수령, 지출관련 증빙서류 허위 작성, 공공기관 청렴 강의무자격자 배정, 청렴강사 사칭 및 강사비 부당 수령 등을 확인하고 2018년 8월~12월 투명사회운동본부 임원에게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그러나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제보자에게 사건 은폐를 강요하고 임금삭감 및 업무배제 등불이익조치를 했고, 2019년 8월~2020년 5월까지 회원소통방에서제보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두 사람은 흥사단 본부에서 감사를 받고 2019년 12월 징계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흥사단 내부규정에 부설조직 임원 징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20년 2월 해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전 운영위원장은 제보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7건의 보복성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지난 3월과 4월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와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마. 반부패운동단체에서 일어난 부패행위와 보복행위에 참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반부패운동과 공익제보자 보호운동을 함께해온 시민사회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이와 같은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와 제보자에 대한 가혹한 보복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협력기관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제보자가 흥사단 내부에 신고한 행위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 신고 이전의 불이익조치는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외부 신고 이전에 조직 내 자정 작업을 거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에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 신고에 앞서 언론에 먼저 제보했던 사건에 과거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국민권익위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립 목적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 제보자 탄압 상임대표, 국민권익위 자문위원직 해촉해야

또한 이들 세 단체는 피신고자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가 현재 국민권익위에 각종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국민권익위 조사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라도 부패행위 은폐와 제보자 탄압에 책임이 있는 상임대표의 자문위원직을 해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